

의안번호	2201384
의 퇴 인	김선교의원
회 답 일	2024.7.18.
추계번호	24B1636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인 주차장에 영유아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9억 100만원, 2030년 5,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1억 300만원(연평균 12억 2,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주차장 설비기준 등)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5,901	48	50	51	53	6,103	1,221

주 1.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존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추산한 결과로서, 향후 관련 기준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주차장 설비기준 등)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음(제1항) 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이하 “영유아동반 자동차”라 한다)(신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주차장 설비기준 등)	○	개정안에 따라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공용주차장)에 주차구획 획정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령에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전 이어서, 기존 전용주차구획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비용을 산정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인 주차장에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계 대상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중 공영주차장으로 가정함
 -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민영)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관리주체가 민간부문인 노외주차장은 제외,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영과 민영을 구분하는 통계정보가 부재하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개정안은 영유아가구 전용주차구획 비율 등의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시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주차면수의 100분의 5로 가정함(「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1))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1)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 1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안 부칙을 참고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공영) 전체 주차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영유아가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필요 주차면수에 주차장설치비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
 - 특별시장등이 관리주체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공영) 전체주차면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구역을 영유아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개정안은 전용구역의 비율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지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시 규정된 비율을 준용함(「주택법 시행령」 제4조²⁾)
 - 주차전용구역에 관한 사항은 [참고자료]에서 확인
- 최근 4년간 주차면수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있으며, 개정안 부칙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용구획을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추계 첫 해에 사업물량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2)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충족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1.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표 2] 노상·노외(공영) 주차장 현황 및 주차면수

(단위: 대수, 면)

		2019	2020	2021	2022
노상주차장 수		23,458	25,325	24,782	24,782
(주차면수)		600,008	591,554	574,618	574,618
노외주차장(공영) 수		13,319	14,549	13,067	14,549
(주차면수)		775,084	833,766	767,024	833,766
합계	주차장수	36,777	39,874	37,849	39,331
	주차면수	1,375,092	1,425,320	1,341,642	1,408,384

주: 노외주차장(공영기준), 2022년 12월 31일 집계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주차구획 설치면적) 주차구획당 주차면적은 일반형 주차장 기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이를 곱한 12.5㎡으로 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평형주차형식 외의 기준의 일반형 적용

[표 3]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자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개정안 부칙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전용구획을 모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 첫 해에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이 후년도는 신규 설치되는 주차면수에 대한 비용을 추산함
 - 최근 4년간 주차면수 연평균 증가율(0.8%)을 적용
 - 2026년은 기존 물량 전체에 대한 전용구획 설치비를 추산
 - 2027년 이후는 전년 대비 늘어난 신규 물량에 대해서만 전용구획 설치비를 추산

- 영유아가구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유사사례(단지조성사업 주차장 설치 시 규정) 비율을 적용하여 주차면수의 100분의 5로 가정

[표 4] 추계대상 주차면수 전망치: 2026~2030년

(단위: 면)

	2026	2027	2028	2029	2030
노상주차장+노외 주차장(공영) 주차면수 전망치	1,454,031	1,465,671	1,477,406	1,489,234	1,501,156
(추계대상 주차면수 A)	1,454,031	11,641	11,734	11,828	11,923
전용주차구획 주차면수 (A×5%)	72,702	582	587	591	596

주: 추계대상 주차면수는 부칙 규정을 참고하여 공포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차장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사업 첫 해인 2026년에 기존 주차장에 설치를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27년 이후부터는 신규 주차면수에 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설치비 단가) 주차단위구획당 설치비용은 5,565원/m²(2021년 기준)으로 나타나며,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2026년 기준 6,493원/m²

[표 5] 주차장 단위구획당 설치비용 단가: 2021년 기준

(단위: 원/m²)

공 종	항 목	계	노무비	재료비	경비
차선도색 (수용성)	수동식, 횡단보도, 주차장	5,565	4,161	880	524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 건설공사 설계 실무요령, 2021

- 이상의 과정을 통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공영)에 영유아가구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6]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전용구획 주차면수(면, A)	72,702	582	587	591	596	—
주차면당 단가(원) ($B=a \times b$)	81,168	82,873	84,613	86,390	88,118	—
면적(m^2 , a)	12.5	12.5	12.5	12.5	12.5	—
면적당 단가(원, b)	6,493	6,630	6,769	6,911	7,049	—
합계($A \times B$)	5,901	48	50	51	53	6,103

주 1.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존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추산한 결과로서, 향후 관련 기준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영유아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기존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추산한 결과로서, 향후 관련 기준이 확정될 경우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과장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이유미	문지은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구 분	주차장 종류	설 치 기 준	규정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20대 이상~50대 미만 : 1면 이상 주차대수 50대 이상 : 2%~4% 범위내 조례 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경우 2%~4%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2%~4%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법 제19조 시행령 제6조, 별표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 이상(조례로 설치 비율 상향 가능)	법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 이상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4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단지조성 사업의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 이상	법 제12조의3 시행령 제4조
거주자 전용· 화물차·외교관 자동차승용차공동 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한 조치로 노상주차장 일부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6조의2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부설주차장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의 예외로 허용	법 제19조의4 시행령 제12조